일반구매론계약서 (구매기업용) 개정대비표

1. 주요개정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일반구매론 계약서 (구매기업용) 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 **제 1 조(목적) ~ 제 2 조(용어의 정의)** (기재생략) **제 3 조(승인명세의 전송)** 1.~8. (기재생략) (신설) (신설) **제 4 조(지급승인) ~ 제 10 조 (대출의 이자)** (기재생략) **제 11 조(결제계좌의 지정)** 구매기업 명의로 실행된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아래의 결제계좌에 해당 금원을 입금하기로 합니다. (㈜하나은행에 개설된 구매기업 본인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 **예금주** / **예금주 사업자번호** / **계좌번호**	**일반구매론 계약서** (구매기업용) (삭제) **제 1 조(목적) ~ 제 2 조(용어의 정의)** (현행과 같음) **제 3 조(승인명세의 전송 등)** 1.~8. (현행과 같음) 9.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. 10.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,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. **제 4 조(지급승인) ~ 제 10 조 (대출의 이자)** (현행과 같음) **제 11 조(결제계좌의 지정)** 구매기업 명의로 실행된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아래의 결제계좌에 해당 금원을 입금하기로 합니다. (㈜하나은행에 개설된 구매기업 본인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 **예금주** / **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** / **계좌번호**	문구삭제 "상생협력법" 및 "하도급법"에 따른 지연이자 부담의무 반영 및 동법 제2조(정의)의 용어 인용 문구수정

제 12 조(개별대출의 상환) ~ 제 17 조(면책) (기재생략) **제 18 조(계약의 효력)** ①~② (기재생략) ③ 이 계약서, 원약정서,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금융결제원의 「B2B 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, 다음으로 원약정서,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(기업용)」,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금융결제원의 「B2B 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」의 순서로 합니다. ④ (기재생략) **제 19 조(관할법원의 합의)**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, 지역본부 또는 구매기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 **제 20 조(기타 특약사항)** (기재생략)		**제 12 조(개별대출의 상환) ~ 제 17 조(면책)** (현행과 같음) **제 18 조(계약의 효력)**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계약서, 원약정서,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금융결제원의 「B2B 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, 다음으로 원약정서,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, 금융결제원의 「B2B 업무 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 제 6 편 B2B 상거래정보」의 순서로 하며,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, 「전자서명법」,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「시행령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동 법 「시행령」,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을 적용합니다. ④ (현행과 같음) **제 19 조(관할법원의 합의)**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 **제 20 조(기타 특약사항)** (현행과 같음)	문구수정 (관련 법령 추가) 문구수정

2. 개정시행일: 2018년 11월 30일

3.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개정 약관 적용 여부: 적용